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구합521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1. A
	2. B
	3. C
	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변 론 종 결	2019. 8. 22.
판 결 선 고	2019. 10. 31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6. 11. 원고 A에게 23,407,120원, 원고 B, C에게 각 17,044,010원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 포함)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건 개요

주식회사 D(이하 'D') 발행주식 총수 40%를 원고 A이, 각 30%를 E과 F이 소유하다가, E과 F이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B, C에게 양도하였다. 피고는 위 주식 양도로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'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 양도시까지 D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인 G이었고, 따라서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의 총 주식 비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'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.

2. 관련 법리

가. 관계 법령(별지 참조)

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조 제5항에 따르면,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(취득세 과세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를 뜻한다)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"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"을 과점주주로 정하고,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,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조의2 제2항,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6촌 이내 혈족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"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에 해당한다.

나. 관련 법리

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,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한편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(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495 판결,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).

3. 판단

가. 인정 사실

(1) G은 원고 B, C의 아버지로, 원고 A과는 4촌 혈족 관계이다.

(2) G은 2008. 8.경 D 발행 주식 총수 1만 주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. 다만 그 주주 명의는 E, F, 원고 A(각 3천 주, 3천 주, 4천 주)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하였으나, 회사 설립 후 아래 (3)항 기재 주식 양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시까지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D 운영을 지배해온 것은 G이다.

(3) 2016. 12. 31. E과 F 소유 주식 전부가 원고 B, C에게 이전되었다(각 3천 주, 이하 '이 사건 주식양도').

(4)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로 원고들이 D 주식 100%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이 D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, 2018. 6. 11.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 포함)로 원고 A에게 23,407,120원, 원고 B, C에게 각 17,044,010원을 부과 · 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3~7, 을1, 증인 E(일부), F, G의 증언, 원고 A 본인신문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G은 D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시까지 그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G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B, C이 D 주식 60%를 취득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, 과점주주의 총 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4. 결론
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재판장 판사 서아람

판사 조현욱

판사 강희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법 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■ 구 지방세법 시행령 (2016. 12. 30.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1조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① 법인의 과점주주(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의 비율"이라 한다)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■ 구 지방세기본법 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4. "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

가. 혈족·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

나. 임원·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

다. 주주·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

제47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법인(주식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(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05

금액을 한도로 한다.
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

■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의2(특수관계인의 범위)

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"혈족·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(이하 "친족관계"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6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제24조(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)

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"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